

법률 제 호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5조제2항 중 “고소가 없으면”을 “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소 제기에 관한 적용례) 제2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.